

제419회 정례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25. 6. 10. ~ 6. 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419회 정례회

(2025. 6. 10. ~ 6. 25.)

제419회 정례회 개회사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초래된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 거는 우리 도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큼니다. 82.5%의 높은 투표율과 82.65%라는 압도적인 지지는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바라는 우리 도민의 간절함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전북지역 공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도정이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이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민께 증명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도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도정의 핵심과제로 부상했지만

민생과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각종 기반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시급한 과제는 하루하루 옥죄이고 있는
도민의 삶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자영업자, 농민, 청년, 소상공인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지금,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규모
사업도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확보도 커다란 과제입니다.

최근 경제성장을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정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가 예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정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예산 소외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핵심현안이 다시 속도를 내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교육이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가며 학력신장,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를 위한 세심한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을 결과물로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정책들이 성과를 내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전북교육이 도약하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이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학생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교사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 선제조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419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학예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한
각종 현안을 점검합니다.

집행부는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문제사안의 경우 반드시
보완 또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진행상황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각 상임위별로 현지의정활동을 펼치십니다.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제1차 정례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도민의 행복한 삶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가 되어 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로지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살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승 우

목 차

제419회 정례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 | |
|------------------|---|
| 1. 공고 및 집회 | 7 |
| 2. 회기 및 운영 | 7 |
| 3. 의 사 일 정 | 8 |

II. 의안접수 및 처리

| | |
|------------------|----|
| 1. 접 수 현 황 | 15 |
| 2. 처 리 현 황 | 16 |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 | |
|--------------------|----|
| 1. 접 수 현 황 | 79 |
| 2. 처 리 현 황 | 79 |
|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80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 |
|-------------------------------|----|
|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81 |
|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81 |
|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82 |
|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82 |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5. 6. 4.(수)
- 집회 일자 : 2025. 6. 10.(화)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5. 6. 10. ~ 6. 25.(16일간, 2025년 : 53일, 총누계 387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4일(연 누계 : 12, 총 누계 82)
 - 상임·특별위원회

| 구 분 | 계 | 의회운영 | 기획행정 | 농업복지 환경 | 경제산업 건설 | 문화안전 방 | 교 육 | 특 별 |
|--------------|-----|------|------|------------|------------|-----------|--------|--------|
| 제419회 정례회 | 21 | 1 | 3 | 4 | 3 | 4 | 2 | 4 |
| 2025 년도 | 73 | 4 | 12 | 14 | 11 | 15 | 10 | 7 |
| 총 누 계 | 180 | 11 | 32 | 32 | 29 | 33 | 28 | 15 |

3. 의사일정

○ 본회의

| 일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6.10.(화) 14:00 | 〈 제1차 본회의 〉 ○ 개 회 식 ○ 간부소개 1.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 |
| 6.11.(수) 10:00 | 〈 제2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문일답(1명) 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 ○ 일괄질문 · 일괄답변(4명) ①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 ② 기획행정위원회 정중복 의원 ③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 ④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 ○ 보충질문 · 답변 | |
| 6.12.(목) 10:00 | 〈 제3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문일답(1명) ①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 ○ 일괄질문 · 일괄답변(4명) 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 ②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 ③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 ④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 ○ 보충질문 · 답변 2.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 |
| 6.25.(수) 14:00 | 〈 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10명) - 이병도 의원, 김희수 의원, 진형석 의원, 정중복 의원, 김정수 의원, 서난이 의원, 장연국 의원, 강동화 의원, 김명지 의원, 국주영은 의원 | |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3.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애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13.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3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 <p>33.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34.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35.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p> <p>36.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p> <p>37.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 <p>38.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p> <p>39.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40.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p> <p>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43.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p> <p>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p> <p>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p> <p>47.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p> <p>48. 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p> <p>49.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p> <p>50.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p> <p>51.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p> <p>52. 노쇼 사기 근절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p> <p>53. 친일과 백선엽 미화 영화의 국회 시사회 개최 규탄 결의안</p> <p>54.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p> <p>55.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p> <p>56.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 촉구 건의안</p> <p>57.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p> <p>58.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p> | |

○ 상임·특별위원회

| 위원회 | 일시 | 차수 | 부 의 안 건 | 비고 |
|-------------|--------------------|----|---|----|
| 의회운영 위원회 | 6. 10.(화) 10:30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애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 ○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처 | |
| 기획행정 위원회 | 6.13.(금) 10:00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자치행정국 결산심사 후)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심사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결산심사 후)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심사(대외국제소통국 결산심사 후) -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자치경찰위원회 결산심사 후) -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6.16.(월) 10:00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대변인, 인재개발원 ○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심사(기획조정실 결산심사 후)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
| | 6.17.(화) 10:00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 | |

| 위원회 | 일시 | 차수 | 부 의 안 건 | 비고 |
|-------------------|--------------------|----|---|----|
| 농업복지 환경 위원회 | 6. 10.(화) 15:30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6.13.(금) 10:00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축산산업국 - 환경산림국 소관 - 농업기술원 소관 | |
| | 6.16.(월) 10:00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
| | 6.17.(화) 10:00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 |
| 경제산업 건설 위원회 | 6.13.(금) 10:00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지원실 ○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 |

| 위원회 | 일시 | 차수 | 부 의 안 건 | 비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 새만금해양수산물국 ○ 새만금해양수산물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 |
| | 6.16.(월) 10:00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 미래첨단산업국 ○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 미래첨단산업국 ○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6.17.(화) 10:00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 활동 - 스타트업 기업(스코트라), 군산조선해양기술협동조합, (주)태평양 | |
|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 6. 10.(화) 15:30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조례안 6건) -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6.13.(금) 10:00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 소방본부,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 |
| | 6.16.(월) 10:00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도민안전실 소관 | |
| | 6.17.(화) 10:00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전북종합사격장 | |
| 교 육 위 원 회 | 6.13.(금) 10:00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도교육청) | |
| | 16: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 위원회 | 일시 | 차수 | 부 의 안 건 | 비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 | 6.16.(월) 10:00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직속기관)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교육지원청) ○ 현지 의정활동 | |
| | 14: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 |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6.18.(수) 10:00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 제 안 자 : 행정부지사 - 심 사 : 질의·답변 ○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결산안 등 심사 - 의회사무처, 자치행정국 - 대변인, 인권담당관(일괄 심사) -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농생명축산산업국 | |
| | 6.19.(목) 10:00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결산안 등 심사 - 미래첨단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결산안 등 심사 -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기업유치지원실,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 |
| | 6.20.(금) 10:00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결산안 등 심사 -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일괄 심사) -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수석전문위원 도교육청 소관 검토보고 등) ○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 제 안 자 : 부교육감 - 심 사 : 질의·답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별 결산안 등 심사 - 대변인·정책국, 감사관·행정국 | |
| | 6.23.(월) 10:00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별 결산안 등 심사 -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국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19회 (2025. 6. 25.기준)

| 구분 | 계 | 조례 | | | | 규칙 | 규정 | 승인 동의 | 예산 결산 | 건의 결의 | 기타 의안 | | |
|-----|-----|------|-----|-----|-----|-----|----|----------|----------|----------|----------|-----|----|
| | | 소계 | 제정 | 개정 | 폐지 | | | | | | | | |
| 총계 | 금회 | 61 | 45 | 28 | 16 | 1 | 0 | 0 | 4 | 2 | 7 | 3 | |
| | 누계 | 1514 | 750 | 366 | 376 | 8 | 7 | 0 | 368 | 59 | 244 | 86 | |
| 의회 | 소계 | 금회 | 49 | 39 | 28 | 10 | 1 | 0 | 0 | 0 | 0 | 7 | 3 |
| | | 누계 | 920 | 585 | 342 | 237 | 6 | 7 | 0 | 5 | 0 | 244 | 79 |
| | 의원 | 금회 | 47 | 37 | 27 | 10 | | | | | | 7 | 3 |
| | | 누계 | 881 | 573 | 339 | 229 | 5 | 0 | 0 | 0 | 0 | 241 | 67 |
| | 위원회 | 금회 | 2 | 2 | 1 | | 1 | | | | | | |
| | | 누계 | 39 | 12 | 3 | 8 | 1 | 7 | 0 | 5 | 0 | 3 | 12 |
| 도지사 | 금회 | 9 | 6 | | 6 | | | | 2 | 1 | | | |
| | 누계 | 454 | 103 | 15 | 88 | 0 | 0 | 0 | 323 | 24 | 0 | 4 | |
| 교육감 | 금회 | 3 | | | | | | | 2 | 1 | | | |
| | 누계 | 140 | 62 | 9 | 51 | 2 | 0 | 0 | 40 | 35 | 0 | 3 | |

2. 처리현황

○ 총 괄

제419회 (2025. 6. 25.기준)

| 구 분 | 접 수 | 처 리 | 처 리 내 용 | | | | | | | 계 류 (미료, 미심사) | |
|-------------|-----|------|---------|------|-----|----|----|----|----|---------------------|---|
| | | | 가 결 | | | 부결 | 폐기 | 철회 | | | |
| | | | 원안 | 수정 | 대안 | | | | | | |
| 총 계 | 금회 | 61 | 59 | 56 | 3 | 0 | 0 | 0 | 0 | 2 | |
| | 누계 | 1514 | 1502 | 1365 | 86 | 0 | 24 | 0 | 25 | 18 | |
| 조 례 안 | 소계 | 금회 | 45 | 44 | 41 | 3 | | | | | 1 |
| | | 누계 | 750 | 744 | 675 | 44 | 0 | 6 | 0 | 17 | 8 |
| | 의회 | 금회 | 39 | 38 | 37 | 1 | | | | | 1 |
| | | 누계 | 585 | 580 | 533 | 32 | 0 | 0 | 0 | 13 | 7 |
| | 도지사 | 금회 | 6 | 6 | 4 | 2 | | | | | |
| | | 누계 | 103 | 103 | 88 | 8 | 0 | 3 | 0 | 4 | 0 |
| | 교육감 | 금회 | | | | | | | | | |
| | | 누계 | 62 | 61 | 54 | 4 | 0 | 3 | 0 | 0 | 1 |
| 규 칙 안 | 금회 | | | | | | | | | | |
| | 누계 | 7 | 7 | 7 | 0 | 0 | 0 | 0 | 0 | 0 | |
| 규 정 안 | 금회 | | | | | | | | | | |
| | 누계 | 0 | 0 | | | | | | | 0 | |
| 승인동의안 | 금회 | 4 | 3 | 3 | | | | | | 1 | |
| | 누계 | 367 | 366 | 316 | 25 | 0 | 18 | 0 | 7 | 1 | |
| 예산결산안 | 금회 | 2 | 2 | 2 | | | | | | | |
| | 누계 | 60 | 60 | 45 | 15 | 0 | 0 | 0 | 0 | 0 | |
| 건의결의안 | 금회 | 7 | 7 | 7 | | | | | | | |
| | 누계 | 244 | 239 | 236 | 2 | 0 | 0 | 0 | 1 | 9 | |
| 기 타 의 안 | 금회 | 3 | 3 | 3 | | | | | | | |
| | 누계 | 86 | 86 | 86 | 0 | 0 | 0 | 0 | 0 | 0 | |

○ 위 원 회

| 구 분 | 회 부 | | | | | | | | | 처 리 | | | | 미 료 | 미 심 사 | |
|-----------------------|-----|------|-----|-----|---------|---------|---------|---------|---|------|------|-----|-----|-----|-------|----|
| | 계 | 조 례 | 규 칙 | 규 정 | 승 인 동 의 | 예 산 결 산 | 건 의 결 의 | 기 타 의 안 | 계 | 가 결 | | 부 결 | 철 회 | | | |
| | | | | | | | | | | 원 안 | 수 정 | | | | | |
| 총 계 | 금 회 | 51 | 48 | 0 | 0 | 1 | 2 | 0 | 0 | 49 | 44 | 3 | 0 | 0 | 0 | 2 |
| | 누 계 | 1193 | 743 | 0 | 0 | 360 | 59 | 24 | 7 | 1181 | 1039 | 88 | 24 | 22 | 0 | 19 |
| 의회 운영 위 원 회 | 금 회 | 2 | 2 | | | | | | | | | | | | | |
| | 누 계 | 43 | 19 | 0 | 0 | 0 | 0 | 24 | 0 | 36 | 30 | 4 | 0 | 0 | 0 | 7 |
| 기획 행정 위 원 회 | 금 회 | 10 | 10 | | | | | | | 10 | 7 | 2 | | | | 1 |
| | 누 계 | 226 | 167 | 0 | 0 | 58 | 0 | 0 | 1 | 224 | 207 | 10 | 0 | 6 | 0 | 4 |
| 농업 복지 환 경 위 원 회 | 금 회 | 13 | 13 | | | | | | | 13 | 13 | | | | | |
| | 누 계 | 214 | 160 | 0 | 0 | 54 | 0 | 0 | 0 | 214 | 197 | 2 | 3 | 11 | 0 | 1 |
| 경제 산업 건 설 위 원 회 | 금 회 | 10 | 9 | | | 1 | | | | 10 | 8 | 1 | | | | 1 |
| | 누 계 | 292 | 129 | 0 | 0 | 160 | 0 | 0 | 3 | 292 | 250 | 22 | 15 | 3 | 0 | 2 |
| 문화 안전 소 방 위 원 회 | 금 회 | 6 | 6 | | | | | | | 6 | 6 | | | | | |
| | 누 계 | 155 | 105 | 0 | 0 | 50 | 0 | 0 | 0 | 154 | 141 | 8 | 3 | 2 | 0 | 1 |
| 교 육 위 원 회 | 금 회 | 8 | 8 | | | | | | | 8 | 8 | | | | | |
| | 누 계 | 204 | 163 | 0 | 0 | 38 | 0 | 0 | 3 | 202 | 172 | 25 | 3 | 0 | 0 | 4 |
| 특 별 위 원 회 | 금 회 | 2 | | | | | 2 | | | 2 | 2 | | | | | |
| | 누 계 | 59 | 0 | 0 | 0 | 0 | 59 | 0 | 0 | 59 | 42 | 17 | 0 | 0 | 0 | 0 |

○ 본 회 의(직접부의)

| 구 분 | 부 의 | | | | | | | | 처 리 | | | | 미 료 | 미 상 정 | |
|-----|-----|-----|-----|-----|---------|---------|---------|---------|-----|-----|-----|-----|-----|-------|-----|
| | 계 | 조 례 | 규 칙 | 규 정 | 승 인 동 의 | 예 산 결 산 | 건 의 결 의 | 기 타 의 안 | 계 | 가 결 | | 부 결 | | | 철 회 |
| | | | | | | | | | | 원 안 | 수 정 | | | | |
| 총 계 | 금회 | 12 | 2 | | | | 7 | 3 | 12 | 12 | | | | | |
| | 누계 | 324 | 12 | 7 | 0 | 5 | 0 | 217 | 80 | 324 | 323 | 0 | 0 | 1 | 0 |

○ 본 회 의(의 결)

| 구 분 | 부 의 | | | | | | | | 처 리 | | | | 미 료 | 미 상 정 | | |
|-----|-----|------|-----|-----|---------|---------|---------|---------|-----|------|------|-----|-----|-------|-----|---|
| | 계 | 조 례 | 규 칙 | 규 정 | 승 인 동 의 | 예 산 결 산 | 건 의 결 의 | 기 타 의 안 | 계 | 가 결 | | 부 결 | | | 철 회 | |
| | | | | | | | | | | 원 안 | 수* | | | | | |
| 총 계 | 금회 | 59 | 44 | | | 3 | 2 | 7 | 3 | 59 | 56 | 3 | | | | |
| | 누계 | 1445 | 718 | 8 | 0 | 341 | 59 | 233 | 86 | 1463 | 1357 | 88 | 13 | 5 | 0 | 0 |

* 위원회 수정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 | | |
|---------|---|--------------|--------------|
| 제 출 자 | 이명연·염영선·김슬지·김성수 이병철·김이재·강동화·이병도 나인권·김만기·김대중·한정수 정종복·진형석·장연국 의원 | 제 출 일 자 | 2025. 5. 19.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공 포 번 호 | 제5798호 |

□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기본계획,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 마. 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
- 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7조)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성수 의원 (찬성의원 7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19.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4호 |

□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와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규정한 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구성·운영하고, 소방 안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퇴직 소방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정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재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성수·김이재 의원 (찬성의원 6명) | 제 출 일 자 | 2025. 5. 19. |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1호 |

□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성수·김이재 의원 (찬성의원 6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19.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0호 |

□ 제안이유

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작성 및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등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의 모집·명부작성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1조의3)

나.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명부작성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2조의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정기·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9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19.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교육감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30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기숙사 운영학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다.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기숙사학생자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학생선발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의안번호 1459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정기·이정린 의원 (찬성의원 13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21.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22호 |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8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26.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교육감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31호 |

□ 제안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4.12.20. 공포 및 2025.6.21. 시행 예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안 제2조)
- 나. 학생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 2)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적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알고 쉽게 정비(전체 조문)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8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26.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교육감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32호 |

□ 제안이유

- 학교교과교습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독서실만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조례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독서실 분야의 운영(안 제4조의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적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전체 조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윤정훈 의원 (찬성의원 8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26.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교육감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33호 |

□ 제안이유

-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 라. 예방활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7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26.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교육감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34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라. 학교장의 책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슬지 의원 (찬성의원 7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보류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의 결 과 | - |
| 이 송 일 자 | - | | 이 송 기 관 | -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별도 분리(안 제5조의2)
- 나.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 결산서 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 다. 수탁기관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염영선 의원 (찬성의원 14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00호 |

□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제2조에 따라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청년공간의 기능,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청년공간의 사용자, 사용료, 사용의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라. 청년공간의 운영 위탁 및 보조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 | | |
|---------|--------------|--------------------|---------|--------------|
| 제 출 자 | 교육감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2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교육감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자 함

□ 주요내용

- 결산 총괄

(단위: 원)

| 구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결 산 액 | 세계잉여금 |
|----|-------------------|-------------------|-------------------|-------------------------|
| 세입 | 4,618,649,659,000 | 4,828,472,076,820 | 4,831,380,193,540 | ·명시이월: 55,255,506,000 |
| 세출 | 4,618,649,659,000 | 4,828,472,076,820 | 4,617,460,265,720 | ·사고이월: 5,193,586,720 |
| | | | | ·계속비이월: 116,167,921,000 |
| 차액 | 0 | 0 | 213,919,927,820 | ·보조금반납액: 157,128,200 |
| | | | | ·순세계잉여금: 37,145,785,900 |
| | | | | 합 계: 213,919,927,820 |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 | | |
|---------|--------------|--------------|---------|--------------|
| 제 출 자 | 교육감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교육감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음악, 리듬, 신체활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표현력 증진, 사회성 및 협동심을 함양하고자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예술 융합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 개인의 인성 함양
- 위탁기간: 2026 1. ~ 2027 12. (2년)
- 사 업 비: 300,000천원

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 | | |
|---------|--------------|--------------|---------|--------------|
| 제 출 자 | 교육감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교육감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음악적 재능을 가진 교육소외계층 학생들과 음악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음악 교육과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 받기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음악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 개인의 인성 함양과 예술적 전문가 육성
 - 음악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필요

○ 위탁기간: 2026. 1. ~ 2027. 12.(2년)

○ 사 업 비: 300,000천원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도지사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793호 |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준을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집행기관의 범위를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나. 유사 조항인 제4조(전북특별자치도의 책무)와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통합(안 제5조)
- 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제9조(사전정보 공개목록) 삭제
- 라.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제목 변경하고 관련 법 조항 추가(안 제2장, 제8조)
- 마. 조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삭제(안 제11조)
- 바. 상위법령에 따라 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변경(안 제14조)
- 사.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규정 신설(안 제19조)
- 아. 내용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 자구수정, 관련 법령 정정 등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도지사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6. 30. | | 공 포 번 호 | 제5792호 |

제안이유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수정(안 제2조제1호)
-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44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도지사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공 포 번 호 | 제5794호 | |

□ 제안이유

-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4.3.19 공포, ’ 25.1.1.시행)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조정·재정·중재위원회 개의·의결·회의소집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안건 회부절차 신설(안 제7조)
- 사. 공시송달 규정 신설(안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도지사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797 |

□ 제안이유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시험 등 의뢰에 대한 결과로 시험성적서 교부 시 종이서류로 출력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별표 및 별지 서식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험성적서 교부 방법 보완(안 제4조4항)
 - 당초 우편 송부에서 전자문서의 형태 발급 추가
- 나.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 일본어투 자구·오타자·기호 및 띄어쓰기 등 수정
 - 상위법령 인용 및 상위법령명 등 수정(안 제5조)
 - 도내에는 개별권한을 갖는 구청장이 없음으로 구청장 자구 삭제 (안 제6조)
 -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 제정 가능하므로 조문 삭제(안 제10조)
- 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의 현행화 및 용어 정비(별표 1, 별지 3~4)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도지사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795호 |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6 신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7 신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결정족수 기준을 명확히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제척 대상 추가, 위원회 성별 균형 조항 신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 매뉴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제9항, 제10조제2항, 제6항,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도지사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796호 |

□ 제안이유

- 효율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근거 및 게시글 삭제 기준을 규정하고,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터넷 민원 관련 근거 법령명 정비(안 제2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나. 홈페이지 “위탁운영근거” 마련(안 제4조)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통해 홈페이지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홈페이지 위탁 운영 근거 명시

다.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기준” 명확화(안 제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홈페이지 내 게시글 삭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홈페이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라. 이벤트 경품 제공 기준 변경(안 제6조제3항 관련)

-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경품(상품권 등) 제공 기준을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홍보 매체별 이벤트 진행 횟수를 고려하여 적합한 기준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정기·서난이 의원 (찬성의원 11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27.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7호 |

□ 제안이유

- 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탄소감축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순환경제 구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관련 산업과 기술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나.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돕는 혁신 기술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후테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라. 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기후테크 기업지원, 금융지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부터 안 제11조)
- 사.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 | | |
|---------|--------------|----------------------|---------|--------------|
| 제 출 자 | 도지사 | | 제 출 일 자 | 2025. 5. 30.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2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총괄
 - 예산 현액 9조 5,835억 8백만원
 - 세입 결산액 9조 6,256억 2백만원
 - 세출 결산액 9조 3,216억 2천8백만원
 - 결산상 잉여금 3,039억 7천4백만원
-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764억 1천4백만원, 사고이월 577억 4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13억 7천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 3천5백만원임.

의안번호 1477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박정규 의원 (찬성의원 9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30.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5호 |

□ 제안이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단일 조문으로 규정된 소량위험물 시설기준을 개별 조문으로 분리하며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주요내용

- 가.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IV 제4호 및 X 제2호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8 IV 제5호아목 4)나) 개정사항(신설) 반영(안 제9조)
- 라.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개별 조문 분리 규정(안 제5조부터 제10조)
- 마. 그 밖에 내용에 따른 조문 위치 조정, 자구 수정 등 수정함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박정규·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6명) | | 제 출 일 자 | 2025. 5. 30.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04호 |

□ 제안이유

-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36전주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나.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안 제4조)
- 다. 올림픽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라.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
- 마. 관련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문 등의 협조 요청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 | | | | |
|---------|--------------|--------------|---------|--------------|
| 제 출 자 | 도지사 | | 제 출 일 자 | 2025. 6. 0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도정 발전의 폭넓은 지원체계 및 협조관계를 구축하고자,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 사전 동의를 제안함

주요내용

| 연번 | 소속 및 직위 | 성명 및 출생지 | 주요 경력 및 주요 공적 | 비고 |
|----|----------------|--------------------------------------|---|----|
| 1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맹성규 (1962.5.16.) 인천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2024.6~) ▸ 국토교통부 제2차관(2017~2018) ▸ 대광법 개정안의 심의·의결을 주도하여, 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결정적 역할 | |
| 2 | | 문진석 (1962.2.12.) 전남 장흥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2024.6~) ▸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겸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입법 취지, 개정 필요성 적극 역설 | |
| 3 | | 정청래 (1965.4.18.) 충남 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2024.6~)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022.8~2024.8) ▸ 법률 개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법안의 원활한 심사 및 통과를 주도 | |
| 4 | | 박범계 (1963.4.27.) 충북 영동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2025.1~) ▸ 법무부 장관(2021.1~2022.5) ▸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의 광역교통체계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서남이 의원 (찬성의원 9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6호 |

□ 제안이유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24. 4. 25. 시행)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일자리 위협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라. 노동전환위원회,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정종복 의원 (찬성의원 10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27호 |

□ 제안이유

- 도내 주취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 유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주취자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박정규·이명연·김정수·국주영은 장연국 의원(찬성의원 13명)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공 포 번 호 | 제5802호 | |

□ 제안이유

- 가. 관광·여행에서 음식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음식관광이 관광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함
- 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음식을 체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개념을 규정(안 제2조)
- 나.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 라.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 바.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2조)
- 사.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4조)
- 아.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자.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안 제17조)
- 차.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희수·김정수 의원 (찬성의원 9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21호 |

□ 제안이유

-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유의 전통 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전통식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국내외 전통식품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마. 전통식품명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전통식품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 사.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임종명·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10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03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종합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나. 전통무예 진흥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동구 의원 (찬성의원 9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24호 |

□ 제안이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조)
- 라.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6조)
- 마.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어촌의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만기 의원 (찬성의원 11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25호 |

□ 제안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조)
- 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수산종자의 분양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서난이·김성수·김정기·박정규 염영선·윤정훈·이명연·전용태 강동화·임승식·국주영은 의원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9호 |

□ 제안이유

가.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 식품 생활 서비스 시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음
 나. 이에 식품 구입을 위한 상점의 부족은 고령자 및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식품 사막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4조)
- 라.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정종복·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11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교육감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35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 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의안번호 148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슬지·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10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05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아동의 권리실태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의안번호 1490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정중복 의원 (찬성의원12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23호 |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관련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 | | | |
|---------|----------------------|---------|-------------|
| 제 출 자 | 오은미 의원 (찬성의원 19명)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의 결 과 |
| 이 송 일 자 | - | 이 송 기 관 | - |
| 공 포 일 자 | -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호성동 일원
- 총 면 적 : 446,213㎡(환지구역 265,563㎡, 수용·사용구역 180,650㎡)
※ 전북개발공사는 환지구역만 참여, 전주시는 수용·사용구역
- 환지사업비 : 1,069억원(용지비 188, 조성비 757, 기타 124)
- 사 업 기 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2020.8) ~ 환지처분 예정(2030년경)
- 사 업 방 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 사업성 분석

-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체비지인 임대주택용지의 용도를 10년 공공임대로 계획하여, 감정가격의 100%로 매각시 사업성 확보 가능

| 구 분 | | 금액(백만원) | 비 고 |
|---------|------|---------|--------------------|
| 수 지 분 석 | 수익 | 114,382 | · 체비지 매각·처분 |
| | 총사업비 | 106,899 | · 용지비, 조성비, 자본비용 등 |
| | 순이익 | 7,483 | · 사업관리비(사업비의 7%)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 |
|---------|---|--------------|-------------|
| 제 출 자 | 김정수·박정규·장연국 국주영은·오은미 의원 (찬성의원 5명)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공 포 번 호 | 제5808호 |

□ 제안이유

-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반시설과 민가, 농업시설 등 주변 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가뭄이나 고온 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의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있고, 산림 주변의 개발 확산으로 산불로 인한 인접지역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산림주변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산불안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주변지역에 대한 소화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정수·임승식·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9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3.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26호 |

□ 제안이유

-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자, 범죄 동기와 주요 대상이 불특정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나. 안 제5조~제6조(실태조사, 추진사업)
- 다. 안 제7조(피해자에 대한 지원)
- 라.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정수 의원 (찬성의원 11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06호 |

□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및 예·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마. 교육과정의 운영, 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도민 참여 및 지원,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업무의 위탁 등(안 제9조~제13조)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국주영은·김슬지·오은미·오현숙 의원 (찬성의원 15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799호 |

□ 제안이유

-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2014년)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운용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이를 개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나.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및 운영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 다.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사업 선정 등(안 제6조)
- 라.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평가 등(안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이정린·오현숙·강태창·김정기 김정수·윤수봉·정종복·김희수 김성수·권요안 의원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09호 |

□ 제안이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낙후된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산촌 진흥 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산촌 진흥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이 조례 외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 | | | |
|---------|-----------------------------|--------------|-------------|
| 제 출 자 | 김정수·김만기·김정기 의원 (찬성의원 9명)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회 부 일 자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공 포 번 호 | 제5801호 |

□ 제안이유

-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조례의 목적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안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 마.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안 제6조)
- 바.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 시 주민 긴급 보호 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임승식·김정수·이정린 황영석·국주영은·오은미 권요안·오현숙 의원 (찬성의원5명)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8호 |

□ 제안이유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체험관광 활성화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사무장 등 운영 인력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5조)
- 나.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계획에 사무장 등 운영 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제8호)
- 다. 농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확보·개선 및 기반정비, 프로그램 개발, 도농교류 활동, 사무장 등 운영 인력의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제 출 자 | 국주영은·김정수 의원 (찬성의원 7명)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공 포 번 호 | 제5820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에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4항)
- 나.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 문화 기능을 위한 지원과 로컬푸드 농부시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호 및 제7호)
- 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의3)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김이재 의원 (찬성의원 10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2호 |

□ 제안이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 24. 4. 27.)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의 요건 및 면적기준 등을 정함(안 제4조)
- 다. 총괄관리사업자의 업무 및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라.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이병도 의원 (찬성의원 7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13호 |

□ 제안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5. 2. 7.)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요건들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을 정함(안 제3조)
- 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요건을 정함(안 제4조)
- 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요건을 정함(안 제5조)
- 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중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 마.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할 관계서류 등을 정함(안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임종명·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7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 |
| 위원회 심사 | 소 관 위 원 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25. 6. 4.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07호 |

□ 제안이유

-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원 순환 기본 조례」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개정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 다. 도지사의 책무와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순환경제 목표관리와 순환이용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바.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 | | | | |
|---------|---------------------|--------------|---------|-------------|
| 제 출 자 | 김동구 의원 (찬성의원 7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9.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1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10.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10. | | 이 송 기 관 | 대통령 등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이른바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란 댓글조작팀을 만들어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교육당국은 이와 관련해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 ‘리박스쿨’은 설립 이후 특정 정당 및 편향적 정치세력과의 친분 과시, 협업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 지지선언 등의 정치행위를 하며 극우성향의 늘봄학교 강사를 빙자한 댓글부대를 양성하고 학생들을 선동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헌법에서는 교육이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정의롭고 자유로운 교육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천명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임

의안번호 1505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제 출 자 | 의장 | | 제 출 일 자 | 2025. 6. 11.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1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12.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 | | 이 송 기 관 | -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위원 선임(안)

(상임위별 가나다순)

| 연번 | 소속 상임위원회 | 의 원 명 | 비 고 |
|----|-----------|-------|-----|
| 1 | 기획행정위원회 | 정중복 | |
| 2 | 기획행정위원회 | 최형열 | |
| 3 | 기획행정위원회 | 한정수 | |
| 4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국주영은 | |
| 5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김동구 | |
| 6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나인권 | |
| 7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서난이 | |
| 8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김성수 | |
| 9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이명연 | |
| 10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장연국 | |
| 11 | 교육위원회 | 윤수봉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 출 일 자 | 2025. 6. 11.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28호 |

□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정책지원관 규정에 관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 나.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속한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의 범위 및 직무수행의 제한, 근무실적의 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정책지원관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정책지원관의 소속 및 순환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서의 준수 의무와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정책지원관의 비밀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아. 의원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경우 의원의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

| | | | | |
|---------|--------------|--------------|---------|--------------|
|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 출 일 자 | 2025. 6. 11.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5. | | 이 송 기 관 | 도지사 |
| 공 포 일 자 | 2025. 7. 11. | | 공 포 번 호 | 제5829호 |

□ 제안이유

- 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의결을 거쳐 공포('14.12.5.)하였음.
- 나. 이에, 전라북도는 단체장이 임명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해 도의회에서 사후 인사검증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전라북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음('17.12.13.).
- 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23.3.21.)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를 제정('23.12.8.)하여 운영 중임.
- 라. 따라서, 대법원 무효판결의 취지와 현행 법·조례 체계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폐지함.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 | | | |
|---------|----------------------|--------------|---------|--------------|
| 제 출 자 | 강동화 의원 (찬성의원 14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0.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6. | | 이 송 기 관 | 대통령 등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가. 담배는 흡연자 본인은 물론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중독성 물질로서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에 따라 그 위험성이 명백히 입증되어 있음.
- 나. 특히, 담배 제조 과정에서의 중독성 강화, 필터 조작, 유해성분 은폐 등 제조물 결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담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보완과 대책을 촉구함.

노쇼 사기 근절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 | | | | |
|---------|----------------------|--------------|---------|--------------|
| 제 출 자 | 이수진 의원 (찬성의원 13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3.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6. | | 이 송 기 관 | 대통령 등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최근 전국에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음.
- 노쇼 사기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엄중한 대처와 사기범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 정지, 계좌 동결 조치 등 피해구제 방안이 역시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정부와 국회에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친일과 백선엽 미화 영화의 국회 시사회 개최 규탄 결의안

| | | | | |
|---------|---------------------|--------------|---------|--------------|
| 제 출 자 | 강태창 의원 (찬성의원 9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3.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6. | | 이 송 기 관 | 국회의장 등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친일과 백선엽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승리의 시작” 시사회가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되었음.
- 백선엽은 만주지역 항일 무장단체 토벌과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바 있음.
- 따라서 친일과 백선엽의 미화 영화를 민주주의의 심장부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식 상영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이 계승한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규탄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전달하고자 함.

의안번호 1511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

| | | | | |
|---------|---------------------|--------------|---------|--------------|
| 제 출 자 | 박용근 의원 (찬성의원 7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3.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6. | | 이 송 기 관 | 대통령 등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현행 18개월인 반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에 비해 두 배에 달해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놓여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심화를 막기 위한 공중보건의의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을 건의하기 위함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

| | | | | |
|---------|----------------------|--------------|---------|--------------|
| 제 출 자 | 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13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3.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6. | | 이 송 기 관 | 대통령 등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현행 사면법 상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이 부재하여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자체를 금지시키는 사면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임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 촉구 건의안

| | | | | |
|---------|---|--------------|---------|--------------|
| 제 출 자 | 김정수·정중복·이정린·김명지 윤수봉·오은미·윤명숙·이병도 의원(8명) | | 제 출 일 자 | 2025. 6. 24.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접부의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2025. 6. 26. | | 이 송 기 관 | 대통령 등 |
| 공 포 일 자 | - | | 공 포 번 호 | - |

□ 제안이유

- ‘24년 8월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 25년 2월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 3개소를 지정하였음.
- 청년친화도시 추진 계획안을 보면 ’ 28년까지 전국에 25개의 청년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수립을 위한 자문·교육 운영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친화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한 국비지원(최대 50%)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 등 청년 유출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각 지자체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나 높은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부족과 25개소에 불과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규모 및 서면평가 위주의 순위결정 방식에 난처함을 표하고 있음.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인구감소지역 등 청년 유출이 심화된 지역의 행·재정적 요건을 고려하여 경쟁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통해 청년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제도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등 청년인구 유출로 침체된 지역을 별도의 청년특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제 출 자 | 의장 | 제 출 일 자 | 2025. 6. 24. | |
| 위원회 심사 | 소관위원회 | - | 회 부 일 자 | - |
| | 의 결 일 자 | - | 심 사 결 과 | - |
| 본회의 심의 | 회 차 | 제4차 본회의 | | |
| | 의 결 일 자 | 2025. 6. 25. | 심 의 결 과 | 가결 |
| 이 송 일 자 | - | 이 송 기 관 | - | |
| 공 포 일 자 | - | 공 포 번 호 | - | |

□ 위원 선임(안)

(가나다순)

| 연번 | 의 원 명 | 소속 상임위원회 | 비 고 |
|----|-------|-----------|-----|
| 1 | 염 영 선 | 기획행정위원회 | |
| 2 | 김 정 수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
| 3 | 오 현 숙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
| 4 | 나 인 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
| 5 | 임 중 명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
| 6 | 김 정 기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
| 7 | 장 연 국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
| 8 | 전 용 태 | 교육위원회 | |
| 9 | 강 동 화 | 교육위원회 | |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25. 5. 8.~2025. 6. 25.)

| 구분 | 계 | 행정 | 교육 | 사회 | 보건 복지 | 환경 | 산업 경제 | 문화 체육 관광 | 농축 수산 | 교통 | 도시 계획 | 건설 | 건축 | 기타 |
|-------------|----|----|----|----|----------|----|----------|----------------|----------|----|----------|----|----|----|
| 금회 | 13 | 2 | 1 | | 4 | 1 | | | 2 | | | | | 3 |
| 2025년 누계 | 32 | 3 | 3 | | 4 | 1 | 5 | 1 | 3 | | | 1 | | 11 |

○ 제출자별

| 구분 | 계 | 인원별 | | | | | 기관단체 |
|-------------|----|-----|----|-------|---------|---------|------|
| | | 소계 | 1인 | 2인~9인 | 10인~99인 | 100인 이상 | |
| 금회 | 13 | 13 | 13 | | | | |
| 2025년 누계 | 32 | 31 | 31 | | | | 1 |

2. 처리현황

| 구분 | 계 | 처리별 | | | | | 처리중 |
|-------------|----|-----|----|-----|----|-----------|-----|
| | | 소계 | 처리 | 불수리 | 취하 | 타기관 이송 | |
| 금회 | 13 | 13 | 11 | | 1 | 1 | |
| 2025년 누계 | 32 | 32 | 27 | | 4 | 1 | |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5. 6. 25)

| 구분 | 위원회별 | 접수 | 처리상황 | | | | 비고 |
|------|---------------|------------|------------|------------|----|----|----|
| | | | 계 | 처리 | 계류 | 반려 | |
| 전회까지 | 소 계 | 264 | 264 | 264 | | | |
| | 운영위원회 | | | | | | |
| | 기획행정위원회 | 13 | 13 | 13 | | | |
| |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 12 | 12 | 12 | | | |
| |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 15 | 15 | 15 | | | |
| |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 16 | 16 | 16 | | | |
| | 교육위원회 | 72 | 72 | 72 | | | |
| | 기 타 | 136 | 136 | 136 | | | |
| 금회 | 소 계 | 13 | 13 | 13 | | | |
| | 운영위원회 | | | | | | |
| | 기획행정위원회 | 2 | 2 | 2 | | | |
| |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 7 | 7 | 7 | | | |
| |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 | | | | | |
| |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 | | | | | |
| | 교육위원회 | 1 | 1 | 1 | | | |
| | 기 타 | 3 | 3 | 3 | | | |
| 누계 | 소 계 | 277 | 277 | 277 | | | |
| | 운영위원회 | | | | | | |
| | 기획행정위원회 | 15 | 15 | 15 | | | |
| |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 19 | 19 | 19 | | | |
| |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 15 | 15 | 15 | | | |
| |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 16 | 16 | 16 | | | |
| | 교육위원회 | 73 | 73 | 73 | | | |
| | 기 타 | 139 | 139 | 139 | | | |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자료요구및제출현황(횟수별)

(2025. 6. 10. ~ 2025. 6. 25.)

| 기관별 | 구분 | 요구 | 제출 | 미제출 | 비율(%) | 비고 |
|----------------|----|-----|-----|-----|-------|-----|
| | 계 | 금회 | 70 | 70 | | 100 |
| 누계 | | 918 | 918 | | 100 | |
| 전북특별 자치도 | 금회 | 55 | 55 | | 100 | |
| | 누계 | 693 | 693 | | 100 | |
|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 금회 | 15 | 15 | | 100 | |
| | 누계 | 225 | 225 | | 100 | |

2. 2025년위원회별요구상황(횟수별)

(2025. 6. 10. ~ 2025. 6. 25.)

| 기관별 | 구분 | 계 | 기획 행정 | 농업복지 환경 | 경제산업 건설 | 문화안전 소방 | 교육 | 운영 | 특별 |
|--------------------|----|-----|----------|------------|------------|------------|-----|----|----|
| | 계 | 금회 | 70 | 14 | 17 | 16 | 19 | 1 | - |
| 누계 | | 918 | 213 | 142 | 178 | 221 | 132 | - | 32 |
| 전북특별 자치도 | 금회 | 55 | 11 | 17 | 14 | 11 | - | - | 2 |
| | 누계 | 693 | 189 | 111 | 150 | 182 | 38 | - | 23 |
|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 금회 | 15 | 3 | - | 2 | 8 | 1 | - | 1 |
| | 누계 | 225 | 24 | 31 | 28 | 39 | 94 | - | 9 |

3. 제12대의회의원요구및제출현황(횟수별)

(2022. 7. 1. ~ 2025. 6. 25.)

| 구분 | 요구 | 제출 | 미제출 | 비고 |
|------------|-------|-------|-----|----|
| 합계 | 2,023 | 2,023 | | |
| 전북특별자치도 | 1,537 | 1,537 |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486 | 486 | | |

4. 제12대의회위원회별요구상황(횟수별)

(2022. 7. 1. ~ 2025. 6. 25.)

| 구분 | 계 | 기획 행정 | 농업복지 환경 | 경제산업 건설 | 문화안전 소방 | 교육 | 운영 | 특별 |
|----------------|-------|----------|------------|------------|------------|-----|----|----|
| 합계 | 2,023 | 424 | 388 | 396 | 413 | 348 | 2 | 52 |
| 전북특별 자치도 | 1,537 | 373 | 311 | 348 | 362 | 104 | 2 | 37 |
|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 486 | 51 | 77 | 48 | 51 | 244 | - | 15 |

5. 제12대의회위원회별요구상황(건수별)

(2022. 7. 1. ~ 2025. 6. 25.)

| 구분 | 계 | 기획 행정 | 농업복지 환경 | 경제산업 건설 | 문화안전 소방 | 교육 | 운영 | 특별 |
|----------------|-------|----------|------------|------------|------------|-----|----|----|
| 합계 | 4,599 | 1,002 | 892 | 891 | 1,054 | 698 | 4 | 58 |
| 전북특별 자치도 | 3,640 | 914 | 734 | 783 | 969 | 193 | 4 | 43 |
|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 959 | 88 | 158 | 108 | 85 | 505 | - | 15 |